

## 2022년도 제1회 진도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2022년도 제1회 진도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3월 4일

진도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용 기간	담당직무	근무 예정 부 서
정책지원관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지원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 2. 응시자격

####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분 야	응시 자격 요건
정책지원관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b>【관련분야】</b> 법률자문, 법무행정, 공공행정 등 <b>【관련분야 학위】</b> 행정학과,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반 행정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b>【관련분야 경력】</b>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조사분석·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 자격요건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다만,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 작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와 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 인정 가능(해당 기간 급여액 등 증빙 제출 필수)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응시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4. 시험일정

가. 시험명 : 제1회 진도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2. 3. 4.(금) ~ 3. 14.(월)	'22. 3. 15.(화) ~ 3. 17.(목)	'22. 3. 22.(화)	'22. 3. 29.(화)	'22. 3. 31.(목)

※ 시험장소, 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진도군의회 누리집(www.jindo.go.kr/council/main.cs) 및 진도군 누리집(www.jindo.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진도군의회 누리집 및 진도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5항)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6. 임용신분 및 보수

- 임용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해지·연장 시 반영
- 계약체결
  - 최초 임용 : 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약정
  - 재약정임용 :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 임용신분 : 일반임기제공무원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일반임기제 7급(상당)	63,693천원	45,237천원	주40시간(09:00~18: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 연봉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 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등

### 가. 원서접수

- 기 간 : 2022. 3. 14. ~ 3. 16.(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만 가능)
- 접수장소 :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1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채용담당자(061-540-3929)에게 등기우편 접수 사실 고지
  - 우)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나.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

<붙임 1 서식>

- 응시 수수료 : (7급) 7,000원

※ 진도군 수입증지(진도군청 1층 농협에서 판매) 첨부, 우편 접수 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으로 대체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② 이력서 1부

<붙임 2 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서식>

###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붙임 4 서식>

### 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⑥ 응시분야 자격증(자격요건 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용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류(관련분야 포트폴리오, 계약서, 보수내역 등) 제출 시 심사를 통해 경력인정여부를 결정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학력, 경력 및 자격증은 제출된 증빙자료만 인정함.

**⑧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분야 학위 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제출
-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붙임 5 서식>

**⑨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 제출한 경력에 대해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경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6 서식>**

**⑪ 개인정보 등 처리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 7 서식>**

**⑫ 기 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 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를 교부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최종 면접시험)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 분 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예정이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61-540-39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아래 누리집에 공고

- 진도군의회 누리집(<http://www.jindo.go.kr/council/main.cs>) / 고시·공고 란
- 진도군 누리집(<http://www.jindo.go.kr>) / 고시·공고 란